



Web Contents



2024년 05월 07일 13시 15분

2023년 성범죄 및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명단 제출 안내

2023.11.09 조회수 151 등록자 김단비

1. 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운영·취업 ☑)

- (근 거)「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제56조,제57조
-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증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 법률개정('23.10.12. 시행)에 따라 점검주체 변경: (당초) 의료인 →(변경)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채용 시 성범죄 조회
- (과태료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운영·취업 ☑)

- (근 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증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채용 시 장애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 (과태료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운영·취업 ☑)

- (근 거)「노인복지법」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전직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의료기관의 장) 전직원 채용 시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 (과태료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와 관련, 범죄경력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점검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범죄경력 대상자 명단.xlsx (148 hit / 11.8 KB) ↓ 미리보기
전체(Zip)다운로드	

목록

이전글 2023년 신체활동사업 대국민 만족도 조사 개인장..	다음글 2024년 영양플러스사업 상반기 신규대상자 모집
---	--

MokPo - Si
Web Contents

